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99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993호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고양시 조례 제2994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고양시 조례 제2995호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고양시 조례 제2996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고양시 조례 제2997호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고양시 조례 제2998호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4
고양시 조례 제2999호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	29
고양시 조례 제3000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고양시 조례 제3001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고양시 조례 제3002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227호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1
------------------	--	----

고 시

고양시 일산서구 고시
제2026-3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위탁 고시 47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99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4항 및 제7조제1항·4항”을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528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3,46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6명

별표 3의 제목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7조 관련)”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4조 관련)”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4조 관련)”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기획정책관 김 복 희
	팀 장 성 명	조직제안팀장 소 병 근
	담 당 자 성명 · 전화	김 세 영 (031-8075-2394)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6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3,528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3,493	-					
	2급	2	2	-	-	-	-	-
	3·4급	4	2	1	-	-	1	-
	4급	17	8	-	3	4	2	-
	4·5급	4	3	-	-	-	1	-
	5급	153	47	5	11	13	33	44
	6급 이하	3,310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 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9	-					
	연구사	9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시정 추진을 위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안 제34조 및 별표 6)

1) 총 정원: (현행) 3,445명 → (조정) 3,528명(증 83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현행) 3,379명 → (조정) 3,462명(증 83명)

2) 직급별 정원 조정

나) 6급 이하: (현행) 3,226명 → (조정) 3,310명 (증 84명)

나) 전문경력관: (현행) 4명 → (조정) 3명 (△1명)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993호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고양시”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양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5년간”을 “최근 7년간”으로, “개인·단체·법인”을 “개인·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정확충기여자”란 선정기준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 호에서 같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 중 그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고양시 세입확충”을 “시의 세입확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을 “시장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않는다”를 “않으며,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양시의 재정확충”을 “시정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단체·법인”을 “개인·법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세정과장 강 복 선
	팀 장 성 명	세정팀장 김 성 조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곽 혜 미 (031-8075-2214)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지방세유공자의 실질적인 우대 및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대상자를 조정하고, 선정 기준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성실납세자 및 재정확충기여자의 선정대상 기준을 조정함
(제2조제2호 및 제3호).
- 나. 지방세유공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함(제4조제1항 및 제3항).
- 다. 고양문화재단의 기획공연에 대한 할인 혜택 대상자를 확대함
(제5조제2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994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결손액”을 “정리보류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세정과장 강 복 선
	팀 장 성 명	세원관리팀장 한 소 영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한 소 영 (031-8075-2240)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수행하던 체납차량 영치 사무를 시청 징수과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무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된 사항(결손액⇒정리보류액)을 조문에 반영함(제3조제2항제3호).
- 나. 시장이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하는 시세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무”를 신설함(제3조제2항제5호).
- 다. 소관 사무 조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3조제4항).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995호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하는”을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2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6항 중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작”을 “개의(開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세정과장 강 복 선
	팀 장 성 명	세외수입팀장 한 순 례
	담 당 자 성명·연락처	황 승 기 (031-8075-2256)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에 맞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간사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제2조).
- 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제7조).
-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함(제8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996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단”을 ““재단””으로 하고,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위·수탁”을 “위수탁”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시민”을 “고양시민”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사전에 시의회”를 “미리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으로, “개시 3개월”을 “개시”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또한 같다”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도감독 하여야”를 “지도·감독 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단이”를 “재단은”으로, “수탁 받은”을 “수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하고자 할 때에”를 “운영하려는 때에는”으로,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다.

이 경우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윤 순 희
	팀 장 성 명	청소년팀장 문 정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김 예 진 (031-8075-2286)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작성·보고 시기 및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14조제1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997호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4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각각 “충전시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각각 “충전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1 중 “이용가능 차량 :”을 “이용가능 차량:”으로, “신고방법 :”을 “신고방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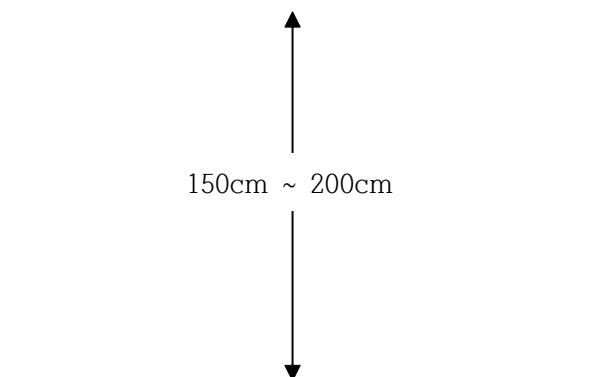
소 관 부 서		기후에너지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기후에너지과장 배 경 호
	팀 장 성 명	그린모빌리티팀장 이 창 훈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이 세 직 (031-8075-2818)

[별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표지

(제8조제2호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 이용정보 ○ 이용가능 차량: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반내용	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 - 충전구역 안이나 앞·뒤·양 측면, 충전시설의 주변 및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충전방해 행위 - 이용가능 차량을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이용가능 차량을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아래의 주차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전기자동차: 14시간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및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 위반행위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지 규격은 가로 70센티미터 ×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표지는 주차장 여건, 이용자의 눈높이,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방해행위 기준을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5.8.5.)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표지에 포함하여야 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시간이 변경되었음.
- 이에 변경된 기준을 조례의 별표(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구역 표지)에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안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과태료 부과 시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별표 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998호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사업
5.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사업
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금지원)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벤처기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양시 내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촉진지구 내에 주소를 둔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자금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대학교·기업·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기업지원과장 배 웅 기
	팀 장 성 명	공장등록팀장 이 성 일
	담 당 자 성명·연락처	임 정 훈 (031-8075-3485)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안이유

- 2024년 10월 11일 고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이후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벤처기업 입지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고양시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제8조).
-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999호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기업지원과장 배 응 기
	팀 장 성 명	창업지원팀장 허 은 경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이 수 정 (031-8075-3573)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2013년 이후 해당 조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여 제도 정비와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3000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캐러밴”을 “카라반”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반하여서는 아니”를 “위반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운영하여야”를 “관리·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구하여야”를 “복구해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시정하여야”를 “시정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유공자”를 “5. 18민주유공자”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한다.

카. 시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캐러밴”을 “카라반”으로 한다.

제15조 중 “변상하여야”를 “변상해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복구하여야”를 “복구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캐러밴”을 “카라반”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다목 중 “캐러밴”을 “카라반”으로, “까지 :”를 각각 “까지:”로, “초과 :”를 각각 “초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전략산업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전략산업과장 김 문 식
	팀 장 성 명	킨텍스지원팀장 안 제 언
	담 당 자 성명·연락처	최 원 우 (031-8075-3517)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반영하여 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을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하고,
- 예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취소시설분에 대한 이용편의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중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민 다자녀 할인 대상 기준을 변경함(제10조제1항제2호카목).
- 나. 예약자의 귀책사유 또는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변경함(별표 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3001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육공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유료공공체육시설과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은 유료위수탁체육시설에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 중 일정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감면 방법과 감면 시간은 주차장 운영 형태와 시설 이용 방법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면 시간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이종덕·김미경·최규진 의원(찬성의원: 원종범 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고양시 내 일부 공원 부설주차장이 2026년부터 유료로 운영됨에 따라, 고양시 체육공원 내 유료 공공 체육시설과 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체육시설을 유료로 사용하는 자가 시설이용료와 주차장 이용료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이용료 일부를 감경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고양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유료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함(제7조제2항 신설).
- 나. 주차요금 감면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조례 제3002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교육문화국 사무 중 문화예술과, 관광과”를 “교육문화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권선영·김학영 의원(찬성의원: 신인선 의원 등 7명)

□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상임위원회 관할 소관 부서를 현행 행정기구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의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사무로 이관함(안 제3조).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4월 7일

고양시 규칙 제1227호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단체·법인명)”을 “(법인명)”으로 하고, “(법인등록번호 등)”을 “(법인등록번호)”로 하며, “개인·단체·법인”을 “개인·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단체·법인명)”을 “(법인명)”으로 하고, “(법인등록번호 등)”을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개인 또는 단체>”를 “<개인>”으로 하고, “성명 (단체명)”을 “성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단체·법인명)”을 각각 “(법인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단체·법인명)”을 “(법인명)”으로 하고, “(법인등록번호 등)”을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세정과장 강 복 선
	팀 장 성 명	세정팀장 김 성 조
	담 당 자 성명·연락처	곽 혜 미 (031-8075-2214)

[별표]

선 정 심 사 기 준 표 (제3조제2항 관련)

1. 재정확충기여자의 경우

성명(법인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납세 규모	○ 개인: 1천만원 이상 - 기본 20점 + 1천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 법인: 5천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천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3년간 평균	40	
채납 유무	○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직전년도 기준 납부 건수가 5건 이상이며,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채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30	
세목 수	○ 매년 세목당 1점	3년간	20	
납세 기여도	○ 세무조사 시 추정금이 없는 경우 - 추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10	

2. 세정시책유공자의 경우

성명(법인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세정시책	○ 세정시책 운영의 효율성 ○ 세정시책 대내외 홍보 효과		30	
재정확충 기여	○ 신세원 발굴 ○ 세정시책 운영에 따른 재정확충 기여 여부		30	
제도 개선	○ 법령 등 제도 개선		20	
대내외 홍보 기여도	○ 세정 운영 평가 수상 여부 ○ 각종 연찬회 등 수상 여부		20	

[별지 제4호서식]

인 증 서

지방세유공자 인증서

고유번호:

성명(법인명):

유효기간:

고양시장

직인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정확충기여자의 선정심사기준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정확충기여자에 대한 선정심사기준표 평가항목을 정비함(별표).
- 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고시 제2026-3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위탁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7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1. 사업명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2. 위탁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지사
3. 위탁기간 : 협약일 ~ 2026. 12. 31.
4. 위탁내용
 - 개별지적(전산)자료 정비 : 탄현동, 법곳동, 주엽동 개별지적도 162필지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 탄현동, 법곳동, 주엽동 연속지적도 138도곽